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1127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7. 체결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28. 접수 제27475호로 마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부터 6, 갑 제5호증의 1부터 11,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2017. 8. 10. C와 보증금액 1억 5,3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는 2021. 5. 24. 거래정지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2021. 6. 17. D은행에 153,538,392원(= 원금 1억 5,300만 원 + 이자 538,39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절차비용 1,688,98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155,227,372원(= 대위변제금 153,538,392원 + 법적절차비용 1,688,9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이다.

나. C와 피고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

C는 2020. 9. 1. E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7,500만 원, 존속기간 2020. 9. 10.부터 2023. 10. 29.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C는 2021. 4. 27. 피고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4. 28.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주문

제2항 기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전세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D은행,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신용보증사고가 2021. 5. 24. 발생하여 그 무렵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2021. 6. 17. D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데도 피고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타일, 세면기 등 욕실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공급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담보를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담보가액과 동일한 범위에서 물품을 출하하고, 거래도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매출을 진행할 경우에 추가담보를 설정하는 물품 여신관리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8년 12월부터 C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추후 담보제공 조건으로 공급하였다. 2021. 4. 30. 무렵

담보가액은 9,000만 원인데, 피고의 채권액은 144,122,333원으로서 담보가액 대비 54,122,333원(= 144,122,333원 - 9,000만 원)이 초과하였다. 피고는 C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20,877,667원(= 7,500만 원 - 54,122,333원)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는 통상적인 회계관리기준에 따라 물품거래 증대를 통한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선의의 담보취득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기존 채무를 담보하는 비율은 약 72%(= 54,122,333원 / 7,500만 원 × 100%)에 이르고, 피고가 C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C에 추가로 공급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부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